

간접보유증권 관련 실체법 통일협약(안)

전 문

이 협약에 서명한 각국은,

전세계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유념하여,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진함에 있어서 중개기관을 통해 유가증권을 보유하거나 증권 위에 권리를 갖는 이점을 인식하고,

간접보유증권을 취득하거나 달리 보유하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자본의 이동 및 자본시장에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 간접보유증권의 국내외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여야 할 중요성을 절감하고,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국내 및 국제규범의 건전성과 법률제도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에 유의하며,

간접보유증권의 보관과 처분에 관한 공통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전통을 모두 아우르는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기능적 접근이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적임을 확신하며,

협약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협약 법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고,

체약국에는 간접보유증권의 보관이나 처분, 또는 이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규제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바, 그러한 규제·감독이 이 협약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이를 제한하거나 이에 달리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장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해석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a) “유가증권”이란 증권계좌에 증가기재할 수 있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취득·처분할 수 있는 주식, 채권 그 밖의 금융상품 및 (현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이나 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b) “간접보유증권”이란 증권계좌에 증가기재된 유가증권 또는 증권계좌에 유가증권이 증가기재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c) “증권계좌”란 중개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서 유가증권이 증가기재 또는 감소기재되는 계좌를 말한다.
- (d) “중개기관”이란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또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 및 자신을 위하여,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중앙예탁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e) “계좌보유자”란 자신의 계산으로 또는 (중개기관의 자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개기관이 그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
- (f) “계좌약정”이란 증권계좌에 관하여 계좌보유자와 해당 중개기관간에 체결된 당해 증권계좌를 규율하는 계약을 말한다.
- (g) “해당 중개기관”이란 증권계좌에 관하여 계좌보유자를 위하여 그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중개기관을 말한다.
- (h) “도산절차”란 채무자의 회생 또는 청산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산 및 영업이 법원 또는 관할기관의 통제나 감독을 받게 되는, 잠정절차를 포함한 사법 또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 (i) “관리인”이란 잠정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여, 도산절차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해당이 있는 경우 기존 경영자관리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j) 유가증권은 발행자가 동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본다.
 - (i) 같은 종류의 주식인 경우
 - (ii) 주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경우, 동일한 통화 및 권종으로 되어 있고 동일 발행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 (k) “관리계약”이란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계약으로서
 - (x) 계좌보유자, 해당 중개기관 및 다른 사람과 체결되었거나
 - (y) 국내 비협약법(non-Convention law)에 규정된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와 해당 중개기관 또는 계좌보유자와 다른 사람간에 체결되었고, 그에 관한 통지가 해당 중개기관에 행하여졌으며,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i) 해당 중개기관은 그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계약과

- 관련이 있는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계좌보유자의 지시를 따라서는 아니된다.
- (ii) 해당 중개기관은 더 이상 계좌보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계약에 규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또한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그 계약과 관련이 있는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그 다른 사람의 어떠한 지시든지 따라야 한다.
- (l) “부기(附記)”란 간접보유증권에 관하여 계좌보유자 이외의 자(해당 중개기관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증권계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계좌약정, 관리계약,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 또는 국내 비협약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의 효력을 갖는다.
- (i) 해당 중개기관은 그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기재가 이루어지는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계좌보유자의 지시를 따라서는 아니된다.
- (ii) 해당 중개기관은 더 이상 계좌보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계좌약정, 관리계약,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에 규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또한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가 행하여지는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그 다른 사람의 어떠한 지시든지 따라야 한다.
- (m) “국내 비협약법(非協約法)”이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2조에서 말하는 체약국에서 시행되는 법률을 말한다.
- (n) “증권결제 시스템”이란
- (i) 유가증권 거래를 결제하거나, 결제 및 청산을 하고
- (ii) 중앙은행(들)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규칙에 관한 규제나 감독을 받으며
- (iii)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로써 당해 시스템을 규율하는 체약국의 선언에 의하여 증권결제 시스템으로 공인된 시스템을 말한다.
- (o) “증권청산 시스템”이란
- (i) 유가증권 거래를 중앙결제기구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청산은 하지만 결제는 하지 않고,
- (ii) 중앙은행(들)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규칙에 관한 규제나 감독을 받으며,
- (iii)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로써 당해 시스템을 규율하는 체약국의 선언에 의하여 증권청산 시스템으로 공인된 시스템을 말한다.
- (p) “통일규칙”이란 증권결제 시스템 또는 증권청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참가자

또는 같은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또한 일반에 공개된 당해 시스템에 관한 규칙(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제정된 시스템 관련 규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적용된다.

- (a) 국제사법의 규칙이 체약국에서 시행되는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 (b) 체약국에서 시행되는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제3조 해석의 원칙

이 협약의 시행,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목적, 협약의 일반원칙 및 국제적 성격, 이 협약 적용상의 통일과 예측가능성을 촉진할 필요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은행 및 피감독 중개기관

체약국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이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 (a) 당해 행위에 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승인, 규제, 감독에 따르기로 하고 이러한 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중개기관
- (b) 중앙은행

제5조 제외되는 기능

이 협약은, 유가증권의 발행자에 대하여, 중앙증권예탁기관, 중앙은행, 명의개서 대리인 또는 등록인 등이 수행하는,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등록 또는 대사(對査)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사람에 의한 중개기관 기능의 수행

- (1) 체약국은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해당 중개기관 이외의 자가, 전반적으로 또는 일정 종류나 내용의 간접보유증권이나 증권계좌에 대하여, 이 협약에 따른 해당 중개기관의 (전부가 아닌) 일부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 (2) 이 조에 따른 선언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a) 해당이 있으면 그 선언과 관련된 간접보유증권 또는 증권계좌의 종류나 내용을 명시할 것
 - (b) 아래의 당사자를 그 이름이나 설명에 의하여 특정할 것
 - (i) 해당 중개기관
 - (ii) 계좌약정의 당사자
 - (iii) 제1항에 규정된 책임이 있는 해당 중개기관 이외의 자
 - (c) 위의 각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할 것
 - (i)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기능
 - (ii) 제9조, 제10조, 제15조 또는 제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협약의 조항
 - (iii) 해당이 있으면 간접보유증권 또는 증권계좌의 관련이 있는 종류나 내용
- (3) 이 협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 조에 의한 선언이 적용되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에서 중개기관 또는 해당 중개기관이란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 도산의 효과

이 협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 협약은 도산절차에 적용되는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발행자와의 관계

- (1)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 협약은 유가증권발행자에 대한 계좌보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이 협약은 발행자가 누구를 계좌보유자 또는 유가증권에 부착된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할 권리가 있는 자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계좌보유자의 권리

제9조 간접보유증권

- (1) 증권계좌에 유가증권을 증가기재함으로써 계좌보유자에게 아래와 같은 권리가 부여된다.

- (a) 특정 이익배당 그 밖의 분배청구권, 의결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에 부착된 권리를 수행하고 실행할 권리
 - (i) 계좌보유자가 중개기관이 아니거나 자기계산으로 행동하는 중개기관인 경우이고,
 - (ii)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 비협약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
 - (b) 해당 중개기관에 지시하여,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권리
 - (c) 해당 중개기관에 지시하여, 유가증권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가증권의 조건에 의하여, 그리고 국내 비협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좌약정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에 의하여, 증권계좌를 통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도록 할 권리
 - (d)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다른 권리
- (2)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a) 제1항에 규정된 권리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b) 제1항 (a)에 규정된 권리는 이 협약, 유가증권의 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해당 중개기관이나 유가증권 발행자, 또는 그 모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c) 제1항 (b) 및 제1항 (c)에 규정된 권리는 해당 중개기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3)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증권계좌에 증가기재함으로써 계좌보유자가 담보권 또는 담보권 이외의 다른 한정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제1항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한계는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계좌보유자가 권리를 취득·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

- (1) 중개기관은 계좌보유자가 제9조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이 협약은 해당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중개기관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그의 권한 내에 있지 아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간접보유증권의 양도

제11조 증가기재 및 감소기재에 의한 취득 및 처분

- (1) 간접보유증권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증권계좌에 그 유가증권을 증가기재 함으로써 해당 계좌보유자가 취득한다.
- (2) 간접보유증권의 취득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국내 비협약법에서도 추가적인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간접보유증권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증권계좌에 그 유가증권을 감소기재함으로써 해당 계좌보유자가 처분한다.
- (4)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담보권 또는 담보권 이외의 제한된 권리는 이 조에 의거하여 유가증권을 증권계좌에 증가기재 및 감소기재 함으로써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다.
- (5)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차감방식(net basis)으로 감소기재 또는 증가기재하는 것의 효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다른 방법에 의한 취득 및 처분

- (1) 계좌보유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담보권 또는 담보권 이외의 제한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다.
 - (a) 계좌보유자가 그 다른 사람과 또는 그 다른 사람을 수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b)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의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계약국에서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조건에 관한 선언을 하였을 것
- (2) 그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국내 비협약법에서도 추가적인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 (b)에 규정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그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해당 중개기관일 것
 - (b) 그 사람을 위하여 부기가 행하여졌을 것
 - (c) 그 사람을 수혜자로 하는 관리계약이 적용될 것
- (4)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이 조에 따라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a) 증권계좌(이 경우 당해 권리는 그때그때 해당 증권계좌의 대변에 남아있는 모든 간접보유증권에 해당된다)
 - (b) 그때그때 해당 증권계좌의 대변에 남아있는 간접보유증권의 특정 종류, 수량,

부분 또는 가액

- (5) 체약국은 그의 법률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할 수 있다.
- (a) 제3항 (a) 내지 (c)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명시된 조건이 어느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 (b) 이 조는 선언에 명시된 범주에 들어가는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부여된 간접보유증권의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 (c) 제4항, 또는 제4항의 각 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 (d) 제4항 (b)호는 그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수정내용과 함께 적용된다는 것
- (6) 제3항 (b)호에 관한 선언은 부기가 제1조(1)(i)나 제1조(1)(ii) 또는 두 가지 모두에 규정된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 (7) 제3항 (c)호에 관한 선언은 관리계약이 제1조(k)(i)나 제1조(k)(ii) 또는 두 가지 모두의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 (8) 준거법은 어떠한 상황에서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비약정 담보권이 발생하고 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제13조 국내 비협약법에 의한 취득 및 처분

이 협약은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다음에 관한 국내 비협약법에 규정된 방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a) 간접보유증권 또는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
- (b)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그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제14조 도산절차에서의 유효성

- (1)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도산절차에서 그와 비슷한 다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관리인 및 채권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 (2) 이 조는 제21조에 규정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이 협약은 제13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유효하게 된 경우 도산절차의 관리인 및 채권자에 대한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의 유효성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권한없는 감소기재 또는 부기

(1) 중개기관은 다음과 같이 권한을 수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권계좌에 유가증권의 감소기재를 하거나 부기 또는 부기의 소거를 할 수 있다.

- (a) 감소기재는 증권보유자에 의하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를 위하여 부기가 행하여진 사람에게 의하여
- (b) 부기는 계좌보유자에 의하여
- (c) 부기의 소거는 그를 위하여 부기가 행하여진 사람에게 의하여
- (d)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2) 권한없는 감소기재, 권한없는 부기의 소거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없는 부기의 효력은 국내 비협약법 및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계좌약정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6조 무효, 취소 및 조건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비협약법 및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계좌약정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에 의하여 감소기재, 증가기재, 부기 또는 부기의 소거가 유효한지, 어떠한 상황에서 무효가 되는지, 무슨 조건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또한 그 효과는 어떠한지 결정된다.

제17조 제3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 (a) “취득자”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i) 그의 증권계좌에 증권이 증가기재되는 계좌보유자
 - (ii) 제12조에 의하여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사람
- (b) 어떤 권리나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 (i) 간접보유제도를 포함한 증권시장의 특성 및 요구조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 (ii) 그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
- (c) 단체인 경우에는 어떤 권리나 사실이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개인의 주의를 끌거나 끌어야 하는 때로부터 그러한 권리나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던 것으로 본다.
- (d) “하자 있는 기재”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유가증권의 증가기재 또는 부기를 말하며,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조건부 증가기재 또는 부기를 포함한다.

- (e) “해당 시점”이란 증가기재가 이루어지거나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한 때를 말한다.

제18조 선의취득

(1) 취득자가 해당 시점에 다른 사람이 유가증권 또는 간접보유증권에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과 취득자의 증권계좌에의 증가기재 또는 취득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 (a) 취득자가 취득한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b) 취득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c) 증가기재, 부기 또는 부여된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그 전에 다른 증권계좌에 행하여진 감소기재 또는 증가기재를 무효로 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취득자가 해당 시점에 그 전의 하자있는 기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 (a) 증가기재 또는 권리가 무효가 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하자있는 기재의 결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 (b) 취득자는 하자있는 기재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담보권의 설정 외에는 무상의 증여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취득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의 권리 및, 해당이 있는 경우, 책임은 준거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5) 국내 비협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은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 또는 계좌약정의 규정에 따른다.

(6) 이 조는 제19조에 의하여 정해진 순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경합하는 권리의 우선순위

(1) 제12조 또는 13조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동일한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는 이 조에 의하여 정한다.

(2) 제5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12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국내 비협약법에 규정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우

선한다.

(3) 제12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 사항의 발생 시점에 따라 그 순위가 결정된다.

(a) 해당 중개기관 자체가 그 권리의 보유자이고 그 권리가 제12조제3항 (a)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그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b) 부기가 행하여진 때

(c) 관리계약이 체결된 때 또는, 해당이 있는 경우, 당해 중개기관에 통지가 있었던 때

(4) 중개기관이 제12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부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결과로써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과 중개기관이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다른 사람의 권리는 중개기관의 권리에 우선한다.

(5) 준거법에 의하여 발생한,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비약정 담보권은 그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순위를 가진다.

(6)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준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5항에 규정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조에 규정된 우선순위는 그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합의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계약국은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기를 통하여 부여된 권리가 제12조에 규정된 다른 방법으로 부여된 권리보다 우선함을 선언할 수 있다.

제20조 중개기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우선순위

(1)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중개기관의 계좌보유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이 부여한 권리 사이의 우선순위 또는 상대적인 권리와 이익은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이 부여한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는, 해당 시점에 그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리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좌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중개기관의 계좌보유자가 가진 권리에 우선한다.

제4장 간접보유 시스템의 무결성

제21조 도산절차에서 해당 중개기관의 유효성

(1)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권리는 해당 중개관이나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해당 중개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에 관한 도산절차에 있어서 관리인 및 채권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2) 이 조는 제12조에 의하여 계좌보유자가 해당 중개기관에 부여한 권리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해당 중개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이 부여한 권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다음의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 편파행위 또는 채권자 사해행위의 부인에 관한 도산절차에 적용되는 법의 규정

(b) 도산절차의 관리인이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실행에 관한 절차 규정

(4) 이 조는 간접보유증권 상의 권리가 제13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제1항에 규정된 도산절차에 있어서 관리인 및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간접보유증권 상의 권리의 효력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상위 중개기관에 대한 압류의 금지

(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증권계좌 또는 사람을 상대로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계좌보유자의 간접보유증권을 압류할 수 없다.

(a) 계좌보유자가 아닌 사람의 증권계좌

(b) 계좌보유자의 증권계좌에 증가기재된 유가증권의 발행자, 또는

(c) 계좌보유자가 아닌 사람 및 해당 중개기관

(2) 이 조에서 “계좌보유자의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압류”란 계좌보유자의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판결, 판정이나 그 밖의 사법·중재·행정적인 결정을 실행하거나 이행할 목적으로 또는 장래의 판결, 판정 또는 결정을 실행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간접보유증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해 간접보유증권의 처분정지, 제한 또는 몰수하기 위한 일체의 사법적, 행정적 그 밖의 행위나 절차를 말한다.

(3) 채약국은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해당 중개기관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실행된 계좌보유자의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압류가 해당 중개기관에 대하여도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그 다른 사람을 이름이나 설명으로 특정하고, 당해 압류가 해당 중개기관에 대하여 유효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중개기관에 대한 지시사항

- (1) 중개기관은 계좌보유자의 간접보유증권에 관하여 계좌보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시에 구속되지도 않으며 그에 효력을 부여할 권한도 없다.
- (2) 제1항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따라야 한다:
 - (a) 계좌약정, 중개기관과 계좌보유자 간의 다른 계약 또는 중개기관이 그 계좌보유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다른 계약의 조항
 - (b) 제12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중개기관을 포함한) 자의 권리
 - (c) 제22조에 따라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관정부 그 밖의 사법·행정기관의 판결, 판정, 명령 또는 결정
 - (d) 국내 비협약법의 규정
 - (e) 중개기관이 증권결제 시스템의 운영자인 경우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

제24조 충분한 유가증권의 보유 또는 확보

- (1) 중개기관은,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그가 계좌보유자들을 위하여 관리하는 증권 계좌에 증가기재된 유가증권의 총 수량 또는 총 금액과 동일한 총 수량 또는 총 금액의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을 자신이 아닌 계좌보유자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확보하여야 한다.
- (2) 중개기관은 아래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하여 제1항을 준수할 수 있다:
 - (a) 유가증권이 발행자의 등록부에 계좌보유자의 명의로 또는 그의 계산으로 보유되도록 조달
 - (b) 발행자의 등록부에 등록된 보유자로서 유가증권의 보유
 - (c) 소유권에 관한 증서 또는 다른 문서의 점유
 - (d) 다른 중개기관에 의한 간접보유증권의 보유
 - (e)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3) 언제라도 제1항의 요건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개기관은 국내 비협약법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이 조는 이 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 그 요건을 확실하게 준수하게 하기 위한 비용의 배분, 또는 그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와 관련된 국내 비협약법의 조항이나, 국내 비협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 또는 계좌약정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계좌보유자의 권리에 따른 유가증권의 할당

- (1)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기관이 보유하는 각 종류의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은 제24조제1항을 확실히 준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중개기관의 계좌보유자가 보유하는 권리에 따라 할당하여야 한다.
- (2) 제20조에 따라, 제1항에 의하여 할당된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은 중개기관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그 채권자들을 위하여 환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개기관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할당은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또한 국내 비협약법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중개기관이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4) 제3항에 규정된 약정은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이 제1항에 의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이 다음 중 하나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된 형식에 의한, 상기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을 보유하는 약정을 포함할 수 있다.
 - (a) 일반적인 계좌보유자
 - (b) 특정 계좌보유자 또는 계좌보유자의 집단
- (5) 채약국은, 중개기관이 그의 계좌보유자를 위하여 보유하는 모든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이 제4항에 규정된 약정에 의하여 구분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할당이 오직 당해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에만 적용되며 중개기관이 자기계산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국내 비협약법에 의하여 선언할 수 있다.
- (6) 이 조는 중개기관에 관한 도산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제26조 중개기관의 도산 시 손실의 분담

- (1) 이 조는, 해당 도산절차에 적용되는 상반된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기관에 관한 어느 도산절차에든지 적용된다.
- (2) 제25조에 따라 어느 계좌보유자, 계좌보유자의 집단 또는 중개기관의 계좌보유자들 전체에 할당된 어느 종류의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의 총 수량 또는 금액이 당해 계좌보유자, 계좌보유자의 집단 또는 중개기관의 계좌보유자들 전체의 증권계좌에 증가기재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의 총 수량 또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분은 아래와 같이 충당한다.
 - (a) 유가증권 및 간접보유증권이 단 1명의 계좌보유자에게 할당된 경우에는, 당해 계좌보유자에 의하여

- (b)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할당받은 계좌보유자들이 각자의 증권계좌에 증가기재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의 수량 또는 금액에 비례하여
- (3) 국내 비협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개기관이 증권결제 시스템의 운영자이고 그 시스템 통일규칙에 그 부족분이 생긴 경우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규정된 방법으로 부족분을 충당한다.

제27조 증권결제 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참여자의 도산

아래의 규정은, 해당 시스템을 규율하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참여자에 관한 도산절차의 개시에 불구하고, 또한 도산절차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무효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 (a) 간접보유증권의 처분, 또는 간접보유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제를 위하여 증권결제 시스템 또는 증권청산 시스템의 참여자가 지시한 사항이 그 시스템 통일규칙에 따라 취소할 수 없게 그 시스템에 입력된 것으로 보는 시점 이후에는 그 지시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증권결제 시스템 또는 증권청산 시스템 통일규칙의 규정
- (b) 증권결제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증권계좌에 대한 유가증권의 증가기재, 감소기재 또는 부기, 부기의 소거가 그 시스템 통일규칙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시점 이후에는 그 유가증권의 증가기재, 감소기재 또는 부기, 부기의 소거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의 규정

제28조 중개기관의 의무와 책임

- (1) 이 협약에 따른 중개기관의 의무(중개기관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는 국내 비협약법과, 국내 비협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좌약정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에 의하여 특별히 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무의 내용이 국내 비협약법, 또는 국내 비협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좌약정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2) 중개기관의 의무에 관한 중개기관의 책임은 국내 비협약법, 또는 국내 비협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좌약정 또는 증권결제 시스템 통일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9조 유가증권발행자의 지위

(1) 채약국의 법률은 거래소나 감독을 받는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는 유가증권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개기관을 통하여 보유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부착된 권리를 제9조에 따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유가증권이 중개기관을 통하여 보유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도록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2) 특히, 채약국의 법률은 자기 명의로 타인(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그러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자가 보유하는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각 부분에 관하여 의결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는 그 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조건은 정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상계

자기 계산으로 간접보유증권을 보유하는 계좌보유자와 그 유가증권의 발행자 사이에서는, 그 계좌보유자가 중개기관(들)을 통하여 그 유가증권을 보유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발행자에 관한 도산절차에서 만일 그 계좌보유자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유가증권을 보유하였다면 존재하였고 행사할 수 있었을 상계권의 존재가 부인되거나 그의 행사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5장 담보거래에 관한 특칙

제31조 제5장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장은 담보설정자가 담보설정자 또는 제3자의 현재나 장래 또는 우발적인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권자에게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담보권을 부여하는 담보계약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담보권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담보설정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과하는 국내 비협약법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담보계약”이란 유가증권담보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말한다

(b) “유가증권담보계약”이란 관련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어떠한 조건으로든지) 부여하는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 (c) “양도담보계약”이란 담보설정자가 관련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거나 달리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자에게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어떠한 조건으로든지) 양도하기로 하는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계약(유가증권의 매각 및 환매에 관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d) “관련 채무”란 담보설정자 또는 제3자의 현재, 장래 또는 우발적인 채무를 말한다.
- (e) “담보증권”이란 담보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간접보유증권을 말한다.
- (f) “담보권자”란 유가증권담보계약에 의하여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g) “담보설정자”란 담보계약에 의하여 간접보유증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제작보유자를 말한다.
- (h) “담보권실행사유”란 담보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담보권자가 담보계약의 조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유가증권을 환가(realize)하거나 일괄정산(close-out netting) 조항을 실행할 권리를 가지는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사유를 말한다.
- (i) “동등한 담보물”이란 담보유가증권과 동일한 내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 (j) “일괄정산 조항”이란 담보권실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또는 양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담보권자의 선택에 따라 정산이나 상계를 통하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게 한 담보계약이나 담보계약을 일부분으로 하는 일련의 연결된 계약의 조항을 말한다.
 - (i) 당사자들의 각각의 채무는 즉시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추정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채무로 표시되거나 또는 해지를 하고 그 금액을 지급할 채무로 대체된다.
 - (ii) 각 당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계정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더 많은 당사자가 그 계정의 차액에 상당하는 순액(net sum)을 지급한다.

제32조 양도담보계약의 인정

계약국의 법률은 양도담보계약이 그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담보권의 실행

(1) 담보권실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실시할 수

있다.

(a) 유가증권담보계약에 따라 제공된 담보유가증권을 아래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i) 매각하고 그의 순 판매대금을 관련 채무의 이행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ii) 담보권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그 가액을 관련 채무와 상계하거나 관련 채무의 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담보계약에 이러한 환가의 방법과 이러한 목적으로 담보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b) 일괄정산 조항을 실행할 수 있다.

(2) 담보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동등한 담보물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담보권실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채무와 관련 채무는 일괄정산 조항을 따르게 할 수 있다.

(3) 담보유가증권은 이 조에 따라 환가할 수 있고 일괄정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a) 담보계약에 그와 다른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의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i) 환가할 의사 또는 일괄정산 조항을 적용할 의사를 사전통지하는 것

(ii) 환가 또는 일괄정산 조항을 적용하는 조건에 관하여 법원, 공무원 또는 다른 개인의 승인을 받는 것

(iii) 환가를 공경매(public auction)나 달리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일괄정산 조항을 달리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

(b) 담보설정자 또는 담보권자에 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계속되는 것과 관계없다.

제34조 담보증권의 사용권

(1) 유가증권담보계약조건에 규정된 경우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는 자신이 담보유가증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 담보유가증권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담보권자가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늦어도 관련 채무가 소멸하기 전까지 담보설정자에게 동등한 담보물 또는, 유가증권담보계약에서 다른 자산의 인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과 관련이 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그 다른 자산을 인도함으로써, 원래 양도받은 담보유가증권(이하 “원 담보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대체할 의무를 진다.

- (3) 관련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제2항에 의하여 인도된 유가증권은
- (a) 원 담보유가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관련 유가증권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적용을 받는데, 그 담보권은 원 담보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 (b) 다른 점에 있어서도 관련 유가증권담보계약의 조건을 따른다.
- (4) 사용권의 행사로 인하여 관련 유가증권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자의 권리가 무효로 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다.

제35조 담보권실행에 관한 국내 비협약법의 요건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는 담보유가증권의 환가나 평가 또는 채무액의 산정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국내 비협약법 상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 담보의 추가 또는 대체

(1) 담보계약에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된 경우 (a)호 및 (b)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하는 것은 담보설정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개시된 당일 직전에 일정 기간 동안, 또는 관련 채무가 발생한 후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거나 무효로 선언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a) 추가로 담보유가증권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 (i) 담보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가치 또는 관련 채무액의 변동내용을 고려하기 위한 것인 경우, 또는
- (ii) 담보권자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으로서 담보설정자 또는 관련 채무를 지는 자의 신인도, 재무적 성과 또는 재무조건에 관한 목표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신용위험의 증가를 가져오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것인 경우
- (iii) 국내 비협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계약에 명시된 그 밖의 상황에서 생기는 경우

(b) 담보유가증권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후 담보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회수할 권리

(2) 채약국은 제1항 (a)호(ii)목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제37조 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6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담보계약 또는 그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유가증권의 제공은 그 담보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담보유가증권이 담보설정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나 개시된 당일 직전에 일정 기간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거나 무효로 선언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제5장에 관한 선언

- (1) 계약국은 이 장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 (2) 계약국은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이 장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 (a) 자연인 또는 그 선언에 명시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체결한 담보계약
 - (b) 증권거래소 또는 감독을 받는 시장에서 거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접보유증권
 - (c) 그 선언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관련 채무에 대하여 규정한 담보계약

제6장 경과 규정

제39조 우선순위

-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계약국에서 발효되기 전에 계약국의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제12조제5항(a)호에 따른 계약국의 선언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된 날짜 이전에 그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국은 기존 권리가 해당 날짜 이전에 갖고 있던 우선순위를 유지함을 선언할 수 있다.
- (3) 이 조에서
 - (a) “기존 권리”란 증권계좌에 증가기재한 것이 아니고, 관련된 날짜 이전에 부여되었던, 비약정 담보권이 아닌 권리를 말한다.
 - (b) “관련된 날짜”란 계약국이 이 조에 따라 행한 선언에서 특정한 날짜로서 선언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말한다.
- (4) 제45조제6항은 이 조에 규정된 선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장 최종 규정

제40조 서명·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

- (1) 이 협약은 []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된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실체법협약을 채택하는 외교회의를 마치고 []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후에는 이 협약은 제42조에 의하여 발효될 때까지 UNIDROIT 본부에서 모든 나라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2) 이 협약은 그에 서명을 한 국가에서 비준, 수용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 (3)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4) 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정식 문서를 기탁소(Depositary)에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제41조 지역경제통합기구

- (1) 주권국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 협약으로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서명, 수용,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다. 그 경우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으로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체약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협약에서 체약국의 수를 언급하는 경우에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체약국인 회원국에 추가하여 체약국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서명, 수용, 승인 또는 가입 시에 회원국이 그 기구에 이전한 권한에 관하여 이 협약으로 규율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기탁소에 선언을 하여야 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항에 따른 선언에서 명시한 권한의 새로운 이전을 포함하여 권한의 배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기탁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 협약에서 “체약국”, “체약국들”, “당사국”, “당사국들”을 말할 때에는 그 문맥에 따라 지역경제통합기구에도 적용된다.

제42조 협약의 발효

- (1) 이 협약은 정식 문서를 기탁한 국가 간에 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세 번째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달의 첫 날에 발효된다.
- (2) 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세 번째 문서를 기탁한 후 이 협약을 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한 각국에서는 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세 번째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달의 첫 날에 발효된다.

제43조 영토의 단위

- (1) 체약국이 이 협약과 관련있는 사항에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둘 이상의 영토단위(territorial units)를 갖는 경우에는 서명·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이 그의 영토 전역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단위에 한하여 적용됨을 선언하고, 언제든지 새로 선언을 함으로써 그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 (2) 그러한 선언은 반드시 기탁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단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3) 체약국이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모든 영토단위에 적용된다.
- (4) 체약국이 이 협약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단위에 적용하는 경우 이 협약에 의한 선언은 각 영토단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한 영토단위에 대한 선언은 다른 영토단위에 대한 선언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5) 이 협약과 관련있는 사항에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단위를 가진 체약국에 대하여 체약국에 시행 중인 법 또는 체약국의 법을 언급하는 것은 관련 영토단위에 시행되는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4조 조건

이 협약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45조 선언

- (1)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최초의 선언과 다른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선언은 이들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2) 이러한 선언 또는 이들 선언을 수정하는 후속 선언, 이 협약에 의한 그러한 선언의 철회는 기탁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3) 서명·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 시에 한 선언 또는 해당 국가가 이 협약의 발효 전에 한 선언은 그 체약국에서 이 협약이 발효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 서명 시 또는 비준 전의 선언은 비준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4)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기탁소에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후속 선언을 할 수 있다.
- (5) 어떠한 후속 선언이든지 기탁소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달의 첫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 (6) 앞의 항에도 불구하고 후속 선언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후속 선언이 없었던 것처럼 이 협약이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46조 선언의 적용

이 협약의 제1장 내지 제6장에 의하여 체약국이 행한 선언은 그 체약국의 법률이 국내 비협약법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7조 선언의 철회

(1) 이 협약에 의하여 선언을 한 체약국은 기탁소에 통지를 하고 언제든지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선언의 철회는 기탁소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달의 첫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철회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철회가 없었던 것처럼 이 협약이 계속 적용된다.

제48조 폐지

(1) 체약국은 기탁소에 통지를 하고 언제든지 이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

(2) 협약의 폐지는 기탁소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달의 첫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폐지의 통지에 폐지가 발효하는 데 더 긴 기간을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탁소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그 긴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앞의 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폐지 발효일 전에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는 폐지가 없었던 것처럼 이 협약이 계속 적용된다.

제49조 평가회의, 수정회의 및 관련사항

(1) 기탁소는 체약국 및 제네바 협약에 참가한 국가와 옵서버, UNIDROIT 회원국 그리고 초대받은 옵서버를 초청하여 24개월에 1회 이상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2) 평가회의의 의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협약의 시행과 적용

(b) 협약 또는 공식 주석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3) 기탁소는 평가회의의 결과를 주시하였다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에 규정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외교회의에서 결정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하며 체약국들은 이 개정안을 비준, 승인 또는 수용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규정된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 협약을 비준,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정된 문언대로 가입한다.

제50조 기탁소 및 그의 기능

(1) 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는 기탁소로 지정된 UNIDROIT에 기탁하여야 한다.

(2) 기탁소는

(a)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i) 새로 서명한 국가 또는 비준·수용·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과 그 날짜

(ii) 이 협약의 발효일

(iii) 이 협약에 의한 선언 및 그 날짜

(iv) 선언의 철회 또는 개정 및 그 날짜

(v) 이 협약의 폐지 통지 및 그 날짜, 발효일

(b) 모든 체약국에 이 협약의 공인된 진정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c) 기탁소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

이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위임대표들은 아래와 같이 서명하였다.

서명은 제네바에서 [] 공히 진정성이 있는 영어와 불어로 된 원본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진정성은 협약회의 대표의 권한으로 영어와 불어의 문언이 서로 일치한다고 90일 이내의 기간에 협약회의 사무국이 입증하여 확인이 되었다.

<번역: 경희대 교수 박환일>